

재심의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37일	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	
	실거주지 주소 (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:)				
이의신청 결정 결과를 알게 되었거나 통보 받은 날짜		년 월 일			
이의신청 결정 결과	결정주문	보상금 지급 [] 대상 / [] 제외대상			
	지급액				
재심의신청 취지 및 사유					

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방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정본 1부 2. 재심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.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4.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안내사항

국방부장관은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심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에 대하여 결정하고,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 및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송달합니다.